



해외건설공사 보증서 발급안내

I. 발급안내

해외건설공사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

최근 변경사항

1. 보증계약 신고대상
“조합원의 해외현지법인과 국내기업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 시” 추가
2. 보증계약 신고시기
“보증서 발급 전 · 공사계약 이후 최대 1개월 이내”에서 “보증서 발급 전”으로 변경

II. 보증서 발급유형

■ 조합원 명의 보증서 발급

- 조합원(해외지점 포함)이 국내기업 또는 동기업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또는 외국기업과 계약하는 경우

■ 해외현지법인 명의 보증서 발급

- 조합원의 해외현지법인이 국내기업 또는 동기업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또는 외국기업과 계약하는 경우

III. 공통 확인사항

■ 보증서 발급 유의사항

- 신용등급 및 보증한도, 보증수수료 요율 등은 기존 조합원 업무기준 적용
- 고액보증심사 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심사 진행
- 해외공사에 관한 구매 · 조달도 조합보증대상에 포함

■ 징구서류

- 계약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, 착공계, 내역서

보증서
발급안내

- 보증채권자가 현지법인인 경우 국내기업이 설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[해외직접투자신고(수리)서, 인터넷 등]
- 보증채권자가 외국기업인 경우 법인 설립 인가증(Certificate of Incorporation) 등의 실체확인서류
- 기타 보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: 한국은행 신고(허가)필증 원본 등

IV. 해외건설공사 보증방법

1. 조합원의 해외현지법인 보증방법

■ 발급자격

① 조합 신용등급 BB등급 이상

- B등급 이하 조합원은 ‘조합담보규칙’에 따라,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담보 제공 필요
(※세부사항 : 지점 상담)

② 해외건설협회에 신고된 법인일 것(정관 제47조 제1항 제16호 근거)

- 해외건설협회(www.icak.or.kr) ⇒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⇒ 해외현지법인 설립 신고 ⇒ 현지법인 현황(※[붙임1] 참조)
※ 현지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해외현지법인으로 간주

③ 출자비율 기준 49%를 충족할 것

- 50% 이상 출자가 원칙이지만 ‘현지법상 제한’ 및 ‘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조합원의 지배력’ 등을 고려하여 49% 이상 출자를 기준으로 함
- 조합원이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한 현지법인설립(인수)신고서의 투자비율로 확인하고, 현지법인설립(인수)신고서는 사본 징구 또는 인터넷 출력물로 대체가능

■ 한국은행 신고

① 신고근거

◎ 외국환거래규정 제7-19조 (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)

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 또는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하여 거주자가 채권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◎ **외국환거래규정 제7-17조 (신고의 예외거래)**

- 1호 : 거주자(채권자)와 거주자(채무자)의 거래에 대하여 다른 거주자가 외국 통화 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
- 6호 :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, 수입 또는 용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보증을 하는 경우
- 11호 :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, 물품수출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와 보증 등을 하는 경우

② **신고주체**

- 보증서 발급 관련 : 각 지점(조합원사 대리신고 가능)
- 공동약정 관련 : 조합원사

③ **신고대상**

계약당사자	보증채권자	조합 → 한국은행 신고	조합원 → 한국은행 신고
조합원의 해외현지법인	국내기업	○	○
	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	○	○
	외국기업	○	○

- 「조합원의 해외현지법인」과 「국내기업 또는 동기업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또는 외국기업」의 해외공사계약에 대한 보증으로서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발급 가능한 입찰, 계약, 하자보수, 선급금 보증

※ 현지법인 명의 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조합원과 조합원의 해외현지법인이 공동으로 조합과 개별거래용 채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, 조합원도 공동약정에 관하여 한국은행에 별도의 보증계약 신고 필요

④ **신고시기 : 조합과 개별거래채무약정 체결 이전**

※ 사후신고(보증서발급 후)시 금융감독원에서 외환금융거래에 대하여 제재조치 발생(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위반)

⑤ **신고방법**

- 한국은행 본점 또는 지역본부 방문신고(우편신고 불가)

보증서
발급안내

- 단, 「한국은행 신고(허가)필증 우편 송부 신청서」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필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음
- 처리기간 : 3일(심사 시 필요자료 추가요구 가능)

⑥ 준비서류 : [붙임2] 참조

조합	조합원
① 보증계약 신고서 2부	① 보증계약 신고서 2부
② 보증사유서 1부	② 조합원의 재무제표 및 해외직접 투자법인의 연간보고서
③ 실체확인 서류 각 1부 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- 법인 인감증명서 - 사용인감계(직인확인증)	③ 실체확인 서류 각 1부 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- 법인 인감증명서 - 현지법인 설립 증명서 등 (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)
④ 보증채권자 실체확인 서류 각 1부(요구 시) 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(※외국법인인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)	④ 공사계약서
⑤ 보증서 초안 1부	⑤ 서약서 1부
⑥ 개별거래채무약정서 사본 1부	⑥ 보증신청서 1부
⑦ 조합원 내부 품의서류 1부(요구 시) (해외현지법인과의 공동약정 관련)	⑦ 기타 신고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
⑧ 위임장 1부(조합원 대리신고 시)	
⑨ 서약서 1부	
⑩ 기타 신고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	

⑦ 변경신고 절차 : [붙임3] 참조

■ 개별거래약정 체결

① 약정주체 : 조합원, 해외현지법인 (공동약정)

② 약정 절차

1) 조합

⇒ 개별거래 약정서에 약정금액 및 보증기간 등 기재사항을 기입한 후 본인확인증과 함께 메일을 이용하여 해외현지법인에게 송부(약정서 간인 안내必)

2) 해외현지법인

⇒ 메일로 송부된 약정서 및 본인확인증에 현지법인의 대표자가 해외현지법인 약정인 자격으로 자필 서명

⇒ 자필 서명한 약정서, 본인확인증을 스캔하여 조합에 메일로 송부(불가피한 경우에
만 Fax 송부), 약정서 원본 등은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반드시 조합에 송부

3) 국내 조합원

⇒ 메일로 송부된 약정서 사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날인
(※이후 해외현지법인 서명 약정서 원본과 합철)

③ 약정체결 시 제출서류

- 조합원 :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법인인감증명서, 해외현지법인 설립(인수) 증빙서류
- 해외현지법인 : 법인인감증명서(발급이 불가할 경우 생략 가능하며 현지법인 대표자의
본인확인증으로 갈음)

④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는 해외건설협회 법인현황 등을 조회하여 존속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

■ 보증서발급

- 발급 명의 : 해외현지법인 명의
- 보증금액 표기 : 외화금액 표기 시에는 원화금액과 병행표기
※영문보증서 제공은 입찰, 계약, 하자보수, 선급금 보증에 한함
- 현지법인 서류 심사 등을 감안하여 청구발급(인터넷 보증 불가)
- 한국은행 신고필증 원본수령 후 보증신청서와 합철 보관

2. 조합원의 해외지점 보증방법

■ 발급자격심사

① 해외지점

- 조합원의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징구하여 지점 등기사항 확인

■ 한국은행 신고

① 신고근거 : 조합원의 해외현지법인 보증과 동일

② 신고주체 : 각 지점(조합원사 대리신고 가능)

③ 신고대상

- 「조합원의 해외지점」과 「국내기업 또는 동기업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또는 외국기업」
의 해외공사계약에 대한 보증

보증서
발급안내

계약당사자	보증채권자	조합 → 한국은행 신고	조합원 → 한국은행 신고
조합원	국내기업	X	개별거래용 채무약정에 따른 보증계약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지만, 조합원·조합원의 해외지점의 계약관계, 계약내용 등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
	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	X	
	외국기업	X	
조합원의 해외지점	국내기업	O	
	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	O	
	외국기업	O	

④ 신고시기 : 보증서 발급 이전

※ 사후신고(보증서발급 후) 시 금융감독원에서 외환금융거래에 대하여 제재조치 발생 (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위반)

⑤ 신고방법

- 한국은행 본점 또는 지역본부 방문신고(우편신고 불가)
- 단, 「한국은행 신고(허가)필증 우편 송부 신청서」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필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음
- 처리기간 : 3일(심사 시 필요자료 추가요구 가능)

⑥ 준비서류 : [붙임2] 참조

조합	조합원
① 보증계약 신고서 2부	① 조합원의 재무제표 각 1부
② 보증사유서 1부	② 조합원 실체확인 서류 각 1부
③ 조합 실체확인 서류 각 1부	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	- 지점설치 신고필증
- 법인 인감증명서	③ 공사계약서
- 사용인감계(직인확인증)	④ 보증신청서 1부
④ 보증채권자 실체확인 서류 각 1부(요구 시)	
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	
(※외국법인인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)	
⑤ 보증서 초안 1부	
⑥ 한도거래채무약정서 사본 1부	
⑦ 위임장 1부(조합원 대리신고 시)	
⑧ 서약서 1부	
⑨ 기타 신고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	

⑦ 변경신고 절차 : [붙임3] 참조

■ 보증서 발급

- 발급 명의 : 조합원 명의
- 보증금액 표기 : 외화금액 표기 시에는 원화금액과 병행표기
 ※ 영문보증서 제공은 입찰, 계약, 하자보수, 선금금 보증에 한함
- 해외지점 서류 심사 등을 감안하여 청구발급 (인터넷 보증 불가)
- 한국은행 신고필증 원본수령 후 보증신청서와 합철 보관

[붙임 1] 현지법인설립(인수)신고서 출력방법

1.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→ “해외건설 e정보시스템” 조합원 로그인



1) 외환거래법 상 조합원과 조합원의 해외지점은 각각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지만, 권리귀속 관계에 있어서는 동일한 법인이므로 조합원의 해외지점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도 조합원 명의의 보증서 발급 가능

2. 좌측 메뉴 중 현지법인신고 → 현지
법인신고완료 → 목록에서 설립국가
선택 후 해당국가의 현지법인설립
(인수)신고서가 조회되면 출력하여
제출



[붙임 2] 한국은행 보증계약 신고서류 세부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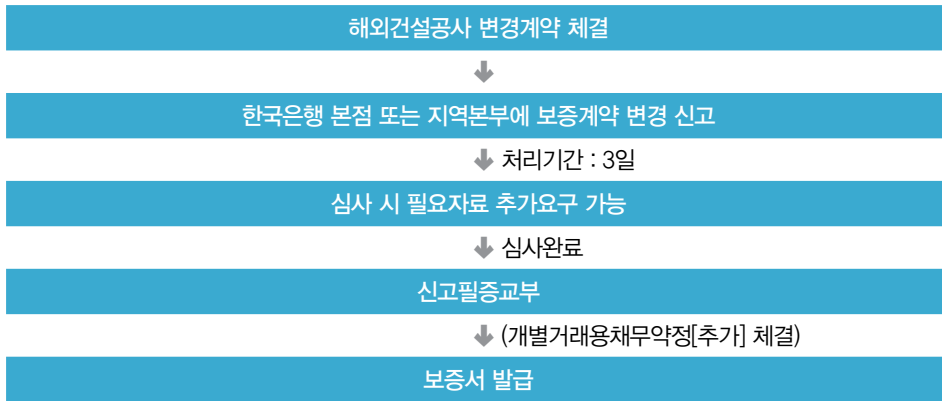
- ① 보증계약신고서
- ② 보증사유서 및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회수방안
 - 해당 신고 사유를 정확·상세히 기재 (보증채권자와 조합원, 조합원과 조합원 해외지점/현지법인과 관계, 공사명, 공사금액 등 보증서 발급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)
 - 보증채무자가 대지급을 할 경우 보증수혜자에게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: 조합원의 재무제표, 해외직접투자법인의 연간보고서 등
- ③ 신고인 및 거래관계인 실체확인 서류
 - 신고인(보증채무자) : 조합
 -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, 법인 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(직인확인증)
 - 거래관계인(보증수혜자) : 조합원
 -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, 법인 인감증명서
 - 해외지점의 경우 지점설치신고필증,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증명서 (Certificate of Incorporation)등의 법인실체 확인 서류
 - 보증채권자
 -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

- 외국기업인 경우, 법인 설립 인가증(Certificate of Incorporation) 등의 법인실체 확인 서류

- ④ 보증계약서 초안 : 보증서 초안을 의미
 - ⑤ 피보증채무 관련 계약서 : 보증신청 대상 공사계약서 등
 - ⑥ 보증채무자가 적절한 내부의사결정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: 「한도거래용 채무약정서(해외지점 발급 시)」 또는 「해외현지법인의 공동약정을 위한 개별거래약정서 및 내부품의서(해외현지법인 발급 시)」
 - ⑦ 위임장(조합원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)
 - ⑧ 서약서
 - ⑨ 보증신청서
 - ⑩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- ※ 한국은행의 추가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

[붙임 3] 변경신고 처리절차

■ 절차도



※ 그 밖의 준비서류는 신규 해외건설공사 보증계약 신고 시와 동일

■ 조합 발급 원보증서에 대한 변경계약 시 업무처리

- 신규 해외건설공사 보증서 발급방법과 동일

■ 타 보증기관 발급 원보증서에 대한 변경계약 시 업무처리

- 지점상담 필요 